

##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번호	2014-75
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	2014. 10. 21
제 출 자	(표주숙의원대표 발의)(김종두·최광열·강철우·이홍의의원발의)

### 1. 제정이유

- 거창군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단위 거주 어르신들의 교통 이동권 불편을 해소하고
-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버스운행 확대방안에 대비 예산절감 기대 및 최상의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농어촌 어르신들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- “부르미택시” , “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” 용어 정의 (안 제2조)
  -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.
  -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.
- 부르미택시 운행방법을 규정 (안 제3조)
- 부르미택시 비용의 신청 및 지원결정 규정 (안 제4조, 제5조)
  - 읍소재지까지: 1인당 농어촌버스요금 부담
  - 면소재지까지: 1대당 100원 부담

### 3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법 제9조

나. 예산조치: 2015년도 12백만원 예산 요구

다. 합 의: 안전총괄과(교통담당),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그 밖에

(1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2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5. 10. 16 ~ 10. 20

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 : 붙임

(4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없음

##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에 부르미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부르미택시”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.
2. “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”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.

**제3조(부르미택시 운행방법)** ① 부르미택시 탑승 대상은 부르미택시 운행 대상 마을 주민으로 한다.

② 부르미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,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.

③ 부르미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부르미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.

**제4조(비용의 신청)** ① 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부르미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비용지원 결정)**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부르미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1. 신청비용의 적정성
2.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

**제6조(사후관리)**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부르미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7조(비용지원 중단)** 군수는 부르미택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
2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 별표 】 (제3조제4항 관련)

## “부르미택시” 탑승자 부담요금

구 분	탑승자 부담요금
해당마을 ~ 읍 소재지	농어촌버스요금 / 1인당
해당마을 ~ 면 소재지	100원 / 1대당

※ 면지역 운행대상 마을의 주민이 면 소재지까지 탑승할 경우 버스로의 환승을 고려하여 대당 100원의 요금을 부담한다.

※ “농어촌버스요금”이란 「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·요금 등 조정 요령」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운임.



## 소요비용 추계서

### 1.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, 제4조, 제5조

### 2.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 부르미택시 탑승비용 지원

가. 사업기간 : 2015년 ~ 계속

나. 주요 사업내용 :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탑승비용 지원

다. 탑승비용 지원

- 총사업비 : 120백만원(군비100%)

- 2015년도 사업비 : 120백만원

- 연차별 예산 지원계획

구분	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이후	비고
계	480	120	120	120	120	
국비						
지방비	580	120	120	120	120	군비100%
자부담						

### 3. 비용소요 내역(연간)

구분	사업내용	소요비용 (백만원)	산출근거	비고
계		120		
301-11 기타 보상금	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에 따른 탑승비용 지원	120	○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이용주민 지원 - 120,000천원×1식=120백만원	